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!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민생당 김소영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안은 「공공디자인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,
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
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.

- 이에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책 및
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
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
자문을 추가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
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디자인 개발 및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